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2월 16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2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「지방재정법」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부터 제2조)
-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및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제4조)
-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,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(안 제6조부터 제7조)
-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부터 제11조)
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12조부터 제19조)
-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(안 제2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##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지방재정법」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·결산 및 보조금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관리·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,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21.1.12. 제정되어 2021.7.13. 시행됨에 따라
- 「지방재정법」을 근거로 규정되었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그 시행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기 위해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2023. 2. 6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.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」을 바탕으로 조례의 목적,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, 지방보조사업자 공모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,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,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제한과 이의신청,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총 20개의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의 정비를 위한 이 전부 개정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.
- 향후 집행부는 부정수급 사전예방 등을 위해 제정된 상위법령 및 이 전부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